

##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1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취업·창업) 등 전체 주기 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① 경영개선지원	• 경영위기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단)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상태 진단</li> <li>■ (경영개선교육) 경영진단 결과 기반의 경영기본교육</li> <li>■ (경영개선사업화) '심화교육(필요시)→ 이행전략도출 및 컨설팅 →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패키지 지원</li> </ul>
② 원스톱폐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예정) 소상공인</li> <li>※ 채무조정은 사업체대표 배우자 지원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정리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치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li> <li>■ (점포철거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3.3㎡당 13만원, 250만원 한도)</li> <li>■ (법률자문)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지원</li> <li>■ (채무조정신청지원)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li> </ul>
③ 재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li> <li>※ 배우자 참여시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만 지원가능</li> <li>※ 전직장려수당은 배우자 지원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직기초교육)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취업기초교육으로 직무직능 탐색, 이력서·면접노하우 과정 등 운영</li> <li>■ (전직심화교육) 대면형태 교육으로, 전직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마인드셋 교육, 전문가 취업상담 등 운영</li> <li>■ (전직특화교육) 취업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직무특화 교육</li> <li>■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 성공에 대한 수당 지급(최대 1백만원)</li> </ul>
④ 재창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창업교육) 재창업을 위한 경영교육 및 기술실습 과정</li> <li>■ (재창업사업화) 인큐베이팅 기관을 통한 외식업e커머스 등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지원(최대 2천만원)</li> </ul>

## 2

#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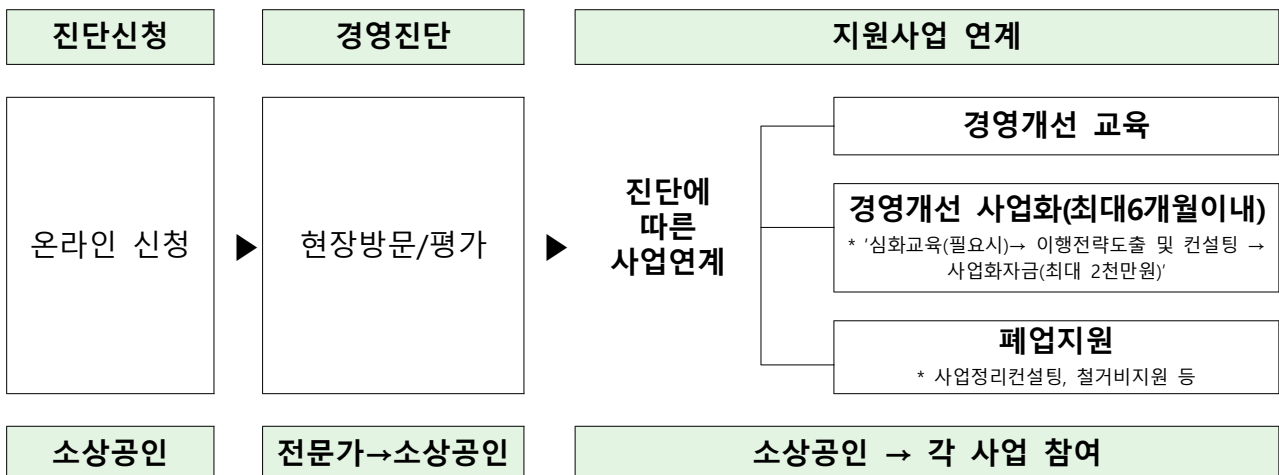
## 1 경영개선지원

### □ 신청자격 : 경영위기 소상공인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경영위기 판별기준
  - ①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 ②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5등급 미만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예정)
  - ③ (지정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별첨3]참조
  - ④ (기 타)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큰(19년 대비 20% 이상) 소상공인 등

### □ 지원규모 : 총 7,400건 내외

### □ 지원내용 :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교육 또는 사업화(최대 2천만원)지원



- (경영진단)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솔루션 제공 및 지원사업(교육, 사업화, 폐업지원) 연계

- (경영개선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 (총 30h 내외)
- (사업화) 경영개선을 위한 '심화교육(필요시) → 이행전략도출 및 실행 → 사업화' 순과정에 따라, 최대 2천만원(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원 중 국비 50%) 사업화 자금지원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50% 이하 (예시) 2,0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600만원	총 사업비의 35% 이하 1,400만원

\* 현물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신청기간** : '23년 3월 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

## 2 원스톱폐업지원

### □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 □ 지원규모 : 총 15,000명 내외

### □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자격요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세부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b>점포철거 지원</b>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 <sup>2</sup> )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 <sup>2</sup> )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ex. 11.4m <sup>2</sup> → 12m <sup>2</sup> , 11.8m <sup>2</sup> → 12m <sup>2</sup> )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b>구분</b>	<b>세부내용</b>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li> <li>•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li> </ul>
	② 기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li> </ul>
③ 유사 사업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li> </ul>	
④ 사업장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li> <li>•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li> </ul>	
⑤ 제외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li> <li>• 지원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li> </ul>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 ▶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 ▶ 채무조정신청지원 : ①사업관련 성실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②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③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 점포철거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①②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행망 동의 시 제출 생략	
채무조정 신청지원 (해당자)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점포 철거지원	<b>구분</b>	<b>제출서류</b>	<b>비고</b>
	건물 임차 확인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불인정 •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②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발급가능
		③ 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 시
	정산 서류	① 점포철거 전·후사진	• 철거 전·후 비교사진 必 * 철거 후 타업체 입점 사진 불가
		②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③ 통장사본(해당자)	• 타인명의(직계가족·배우자) 통장지급 경우에만 제출
		④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⑥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신청인 계좌(통장)에서 철거업체 계좌(통장)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현금거래 불인정) -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이용대금 명세서 * 카드 결제한 경우, 마지막 납부 월의 이용대금명세서 확인 必 ※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본사에서 발행한 정산내역서(철거비용) 제출

□ 신청기간 : '23년 1월 1일부터 ~ 연중 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 3 재취업지원

□ 신청자격 :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
- ▶ 전직기초·심화·특화 교육의 경우, 만69세 이하까지 지원하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로 한정

□ 지원규모 : 총 19,400건 내외

□ 지원내용 : 폐업(예정)소상공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취업 교육	전직 기초교육	▶ 지원방식 : e-러닝을 통한 취업기초교육 ▶ 지원내용 : 직무·직능 탐색 및 이력서·면접노하우, 취업성공사례 등 교육
	전직 심화교육	▶ 지원방식 : 대면 형태의 교육으로 전직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지원 ▶ 지원내용 : 취업마인드 함양, 1:1 직업상담, 모의면접실습, 적성검사 등 교육
	전직 특화교육	▶ 지원방식 :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등 ▶ 지원내용 : 취업을 위한 기업차별 인재양성·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교육
	* (취업교육 지원체계) 전직기초교육(연1회) → 전직심화교육(연1회) → 전직특화교육(연1회)로 참여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3회 참여가능	
전직 장려수당	▶ 지원대상 :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①전직기초교육 수료→전직심화교육 수료 ②전직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구직활동인정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  ▶ 신청기간 : 희망리턴패키지(전직기초교육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 ①(구직활동) 구직활동을 포함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 ②(취업완료)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1개월 이내 신청(총 14개월 이내)	

구분	지원 세부사항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액
	공통	소상공업 폐업(필수)	
	분할 지급	1차 (구직활동) ①,②,③ 중 택 1 ①취업교육(전직기초교육+전직심화교육) 수수료 ②취업교육(전직기초교육) 수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③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심리)수수료 +구직활동인정사업(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40만원
		2차 (취업완료) ④,⑤ 전체준용 ④희망리턴패키지(전직기초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⑤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60만원
	일괄 지급	(취업완료) ①,②,③전체준용 ①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전직기초교육)·사업정리컨설팅) 수수료 ②희망리턴패키지 수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100만원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신청시 유의사항 >

- ▶ 전직기초교육 : 수수료일을 기준으로 전직장려수당 신청가능 기간 확정
- ▶ 전직심화교육 : 전직기초교육 수료자에 한해 전직심화교육 신청 가능
- ▶ 전직특화교육 : 전직기초교육 수료자에 한해 전직특화교육 신청 가능
- ▶ 전직장려수당 :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본인에 한해 수당 지급(배우자 지원 제외)

○ 신청서류

구분	추가서류	비고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①②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행망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취업교육 (배우자 참여시)	①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배우자 취업교육 참여동의서	-
전직 특화교육	① 채용기업 지원서 (교육과정별 상이) ② 자기기술서 등 (교육과정별 상이)	'23년 중 별도공고
전직 장려수당	① 본인명의 통장사본(공통) ② 구직활동 증빙서류(구직활동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또는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필수 - 노사발전재단 교육 수료증(노사발전재단 교육 참여시) ③ 취업완료 증빙서류(취업완료시 제출) 1)근로계약서 2)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보험토탈 서비스 (total.kcomwel.or.kr)

□ 신청기간 : '22년 1월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



## 4 재창업지원

□ 신청자격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 폐업한 업종이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 지원규모 : 총 5,500건 내외

□ 지원내용 : 재창업교육, 재창업사업화(교육+멘토링+자금(최대 2천만원))지원

- (재창업교육) 유망·비과밀 업종 중심의 이론·실습 교육(50H)
- (재창업사업화)



\* e커머스 등 특화업종을 인큐베이팅 형태로 지원하며, 별도 공고 예정(2월)

- (자율프로그램) 폐업 원인분석, 재창업 업종·분야 유망기업의  
업계현황·트렌드 등 심화교육, 네트워킹 등
- (멘토링) 재창업 계획 수립, 아이템 개발 및 고도화, 매장모델링,  
홍보·마케팅 전략 등 사업화 쏠과정의 멘토링
- (사업화자금) 최대 2천만원 국비지원(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원 중 국비 50%)

###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50% 이하 (예시) 2,0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600만원	총 사업비의 35% 이하 1,400만원

\* 현물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3년 3월 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

### 3

## 기타 참고사항

### □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세부내역	신청기간	신청방법
① 경영개선지원	경영진단	'23. 3월~예산 소진시	<p>온라인 신청접수</p> <p>① <a href="http://hope.sbiz.or.kr">http://hope.sbiz.or.kr</a></p> <p>② 검색창에 희망리턴패키지</p>
	경영기본교육	'23. 3월~예산 소진시	
	경영개선사업화	'23. 3월 중(별도 공고)	
②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23. 1월~예산 소진시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③ 재취업지원	전직기초교육	'23. 1월~	
	전직심화교육	'23. 3월~예산 소진시	
	전직특화교육	'23. 3월 이후(별도 공고)	
④ 재창업지원	재창업교육	'23. 3월~예산 소진시	
	재창업사업화	'23. 3월 중(별도 공고)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별첨1] 소상공인 기준 (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 소상공인 기준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2]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b>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b> 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용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용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경영위기 지정지역

### ①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8호, 제2020-21호, 제2021-75호, 제2021-93호

지정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18.3.21.~'23.3.20.	전남2(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20.2.27.~'25.2.26.	강원2(북평국가, 북평일반) 전북2(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전남6(나주일반, 나주혁신, 장흥바이오식품, 강진, 동함평일반, 세풍일반)
'21.9.9.~'23.9.8.	전남1(목포대양일반)
'21.12.30.~'23.12.29.	충남1(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 ②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42호, 제2022-328호, 제2022-904호

지정기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1.5.29.~'23.5.28.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통영시, 경남 고성군, 전남 목포시, 전남 영암군, 전남 해남군
'22.4.5.~'23.4.4.	전북 군산시
'22.10.31.~'24.10.30.	경북 포항시

### ③ 특별재난지역

- 최근 3년간('20~'2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선포연도	특별재난지역
'20년(코로나)	대구, 경북 경산, 경북 청도, 경북 봉화
'20년(호우)	(1차)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충남 아산시, 천안시 (2차)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3차) 광주 북구, 광산구, 경기 이천시, 여천군, 가평군, 강원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영동군, 단양군, 충남 금산군, 예산군, 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3차) (광주) 남구 효덕동, 대촌동, 동구 학운동, 지원2동, 서구 유덕동, 서창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백암면, 원삼면, 포천시 이동면, 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화촌면, 춘천시 동면, 남면, 남산면, 영월군 영월읍, 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백곡면, 옥천군 군서면, 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 시덕면, 고창군 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 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 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 부림면
'20년(태풍)	(1차) 강원 삼척시,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2차-시·군) 강원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2차-읍·면·동)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광면, (강원) 속초시 대포동, 평창군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 (경북)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영양군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 장평동, 양산시 상북면, 남해군 상주면, 남면, (제주) 제주시 애월읍
'21년(호우)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
'21년(태풍)	경북 포항시
'22년(산불)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22년(폭우)	(시·군)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경기 성남시, 경기 광주시, 경기 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청양군 (읍·면·동)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여주시 금사면, 경기 여주시 산북면
'22년(태풍)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22년(이태원)	서울 용산구